

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. 1. 16 선고 2018가단2299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인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12. 19

판결 선고 2019. 1. 16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위 각 건물 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피고는 원고 소유의 안동시 C 대 1,85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, 원고에게 위 각 건물 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권형관

별지